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정부는 최근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한 도급사업의 확산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6.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급인의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 모두에게 작업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수급인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유해·위험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급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과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급인이 안전 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 7.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I. 개요	4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4
2. 도급사업 사망사고사례	5
II.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7
1. 도급사업 필수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	7
2. 도급사업 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 안전보건법규(현행법/개정법)	12
3.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14
4.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회” 운영	19
III.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21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21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23
3. 선정기준 및 환류	24
IV.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26
[붙임]	29
1.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29
2. 도급·수급 관련 주요 안전보건법규(개정법)	36

I

개 요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 및 법적책임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 도급업체(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함에 따라,
 - 총남 태안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사전방지

- ➔ 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생산활동 차질, 산업재해 보상, 기업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해소의 사회적 책임 실천

- ➔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하여 위험성이 큰 작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 가능성이 크며 영세한 규모로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고,
 - 작업장소가 도급업체의 지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은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전면 시행)에 따른 도급인 책임범위 확대

-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
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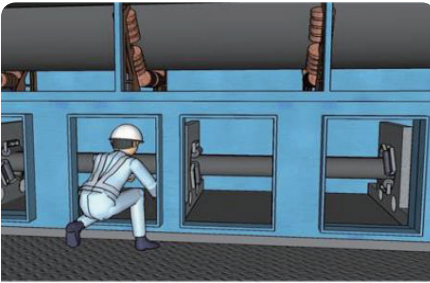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함

2 도급사업 사망사고사례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 ➔ 도급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워 산재위험에 노출



개방된 점검구에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컨베이어에 몸이 말려들어가 1명 사망



가동 중인 컨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작업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유해·위험정보를 사전에 미제공

- ➔ 작업 관련 유해·위험정보를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의 위험예측과 사전 대응이 곤란



하수처리시설 내 소화조 이송배관 부분 교체 작업 중 인화성가스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사용으로 폭발이 발생하여 2명 사망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갔다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사하여 2명 사망

혼재 작업 시 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

- ➡ 소속이 다른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도급인의 조정 및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조선소의 굴리크레인과 지브형크레인이 부딪혀 지브형크레인의 메인지브가 낙하하여 6명 사망, 25명 부상



건물지하 설비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수급업체가 동시 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로 8명 사망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 ➡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우선하는 계약으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없이 작업 진행



건조중인 선박의 탱크내부에서 스프레이도장 작업 중 환기 불충분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4명 사망



냉각탑 내부의 내장재(충전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냉각탑 내부로 유입된 질소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4명 사망



II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 필수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

-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유기적인 원 · 하도급 간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 관련법규 준수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협업체 구성 및 운영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방법 등 협의

위험성평가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점검

- 1회/2일 이상 등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이상 등 합동안전보건점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작업환경 측정 · 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안전보건교육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 · 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 공사기간 단축/위험공법 사용금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 최고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②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 위험의 특성, 규모, 전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설정
 -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전 구성원에 공표
 - 사업장 전체 목표, 부서별 세부 목표,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 실행
 -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 · 과별)로 수립
 - 수단 · 방법 · 일정 · 예산 · 인원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
- * 안전시설개선, 교육훈련, 보호구 구입,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추진항목별로 책정

③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 · 책임 · 권한 설정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 (역할 · 책임 · 권한 등) 명확화
- 유해 · 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④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여부 및 활동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 안전보건 관련법규,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모니터링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파악과 시정조치 절차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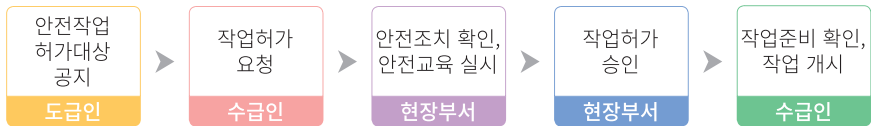
5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보유·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 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6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예시)



※ 안전담당부서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안전관리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유해·위험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용접·절단 또는 스파크 등 다른 점화원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밀폐 공간 출입 시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굴착 작업 시
- 전기 작업 시
- 고소 작업 시
- 중장비 사용 작업 시
- 방사능 사용 작업 시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 · 위험시설 및 유해 · 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 · 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 · 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 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③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 법정검사 수검 및 방호조치 구비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④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 및 조치

-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 · 중 · 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 · 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⑤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 작업 재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를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하고, 완료 확인결과에 따른 작업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⑥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결정
- 수리·정비 작업 시 Lock-out/Tag-out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시스템 등의 소통 채널 운영
-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⑦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도급작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종료 후 성과 평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소방서 등)과 전문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⑧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도급작업장의 원·하청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외부인 출입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외 보호구 구비

2 도급사업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안전보건법규(현행법/개정법)

- ➡ 도급사업에서의 법규사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원·하청에서는 법적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이 필요함
- ➡ 도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요구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 및 안전보건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안전보건활동으로 이행
 - 관보, 법제처, 인터넷 등으로 법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도급사업 관련 주요 산업안전보건법규(현행법)

항 목	조 항(산업안전보건법)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8조
• 안전보건조정자	제18조의2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제20조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	제28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작업환경측정 •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제29조 제5항 제29조 제8항 제29조 제9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30조
• 위험성평가	제41조의2



도급사업 관련 주요 산업안전보건법규(개정법)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책임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항 목	조 항(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
2. 도급의 승인	제59조
3. 도급의 승인시 하도급 금지	제60조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
• 산업재해예방 책임 주체 확대	
5.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10조 제2항, 제3항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제62조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제63조
8.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9.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호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제64조 제1항 제5호 제64조 제1항 제6호 제29조 제4항 제25조 제36조 제125조 제2항, 제6항
1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12.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
13.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1조, 제54조
14.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제169조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15.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7조
16. 안전보건조정자	제68조
17.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 · 변경 금지	제69조
18.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0조
19. 설계변경의 요청	제71조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72조
21. 기계 ·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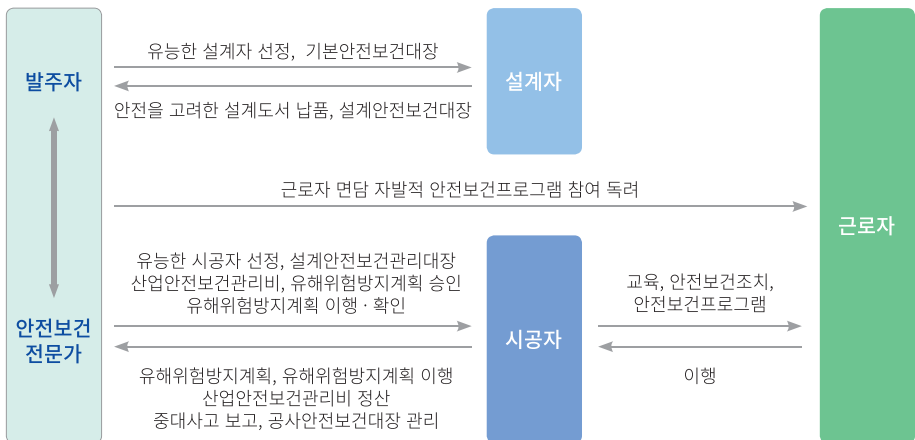
※ 상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3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단계 참여자들의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발주자가 선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되도록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설계에 반영토록 발주자가 확인 · 관리하여야 함
- 시공자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해당시)을 작성토록 하고 발주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에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자원(공사금액 등)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은 발주자의 관심과 안전보건관리 역량이므로,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건 전담조직 또는 전문가가 없는 발주자(기관)는 외부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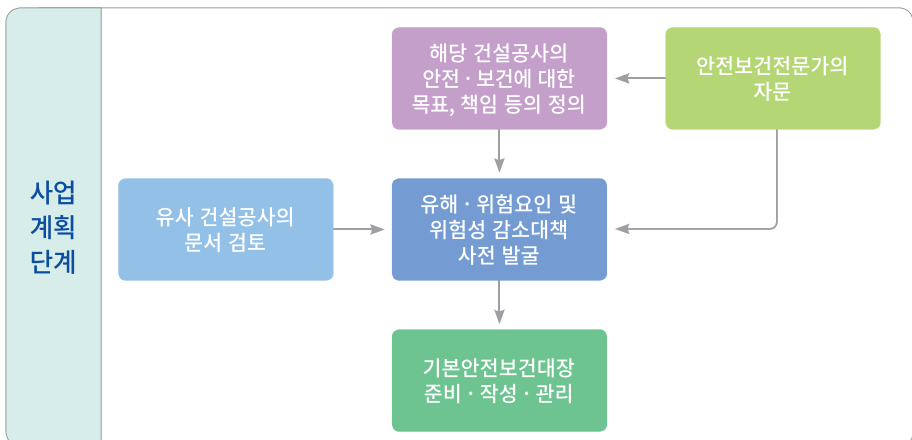
➔ 사업전반

- 발주자는 사업 전(全)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총괄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기본·설계·공사 안전 보건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와 공사(시공) 단계에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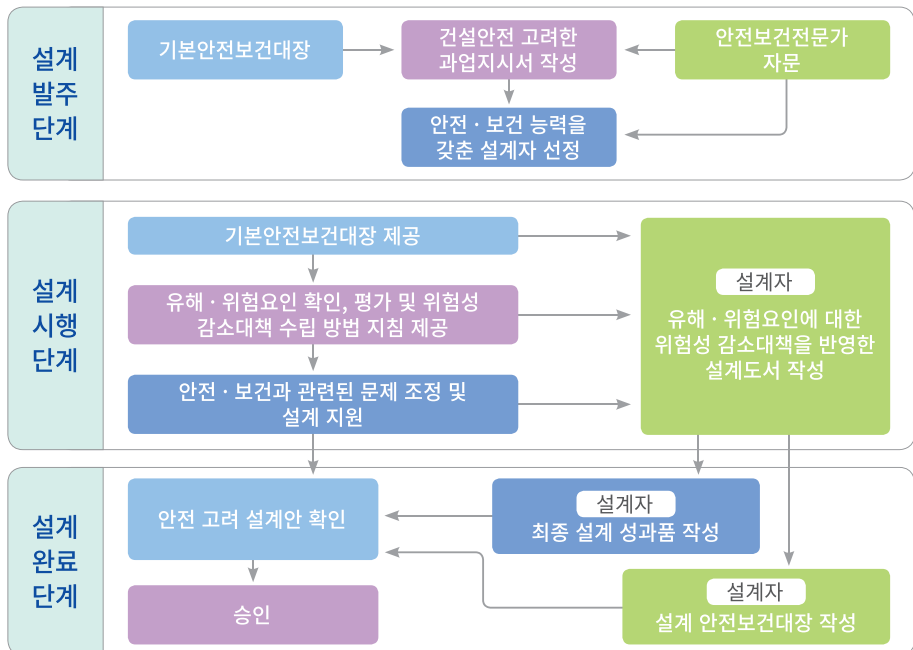
사업계획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설계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 · 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 ·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의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또한, 설계자가 유해 · 위험요인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여야 함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공사발주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입찰내용(입찰 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평가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 공사착공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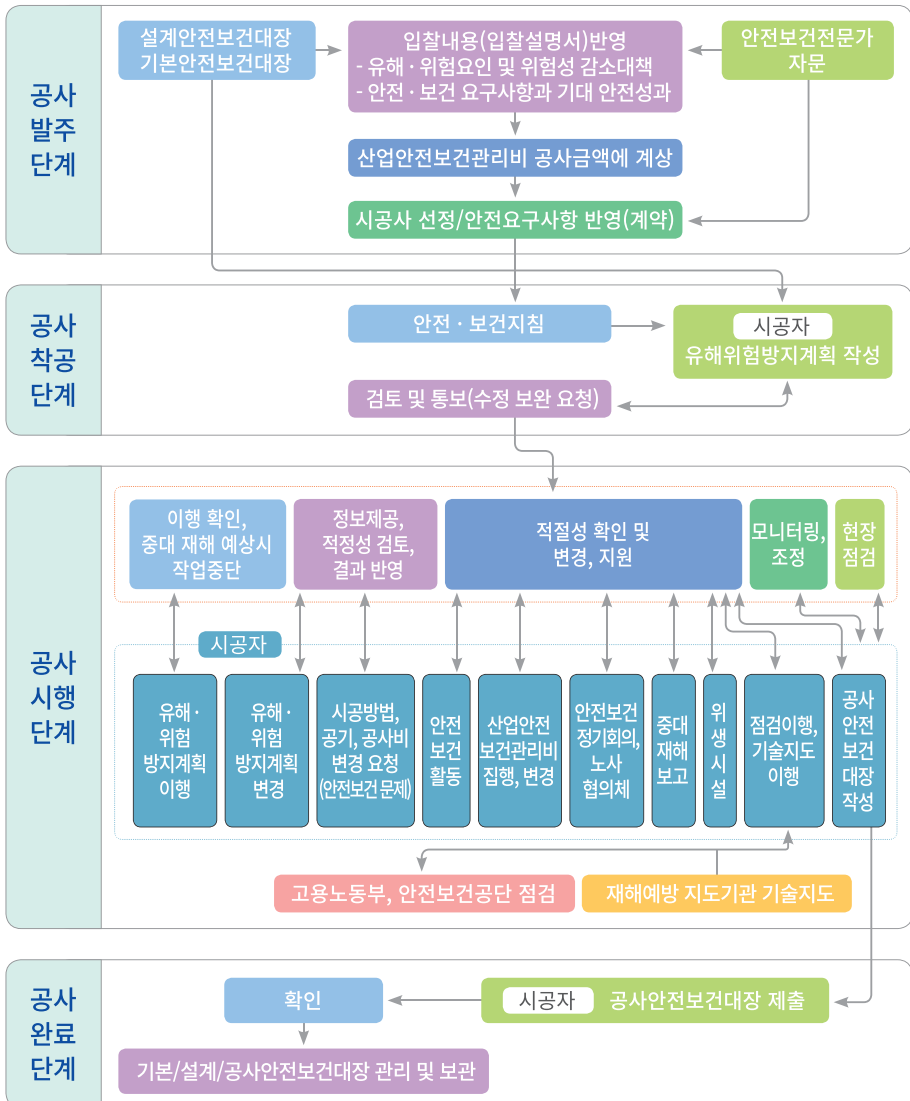
➔ 공사시행 단계

-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이행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의 적절성
 -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기회의(노사협의체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 위생시설의 설치
 - 점검 및 기술지도 이행결과
-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함
- 발주자는 시공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 공사금액 연장,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함

→ 공사완료 단계

-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함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4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업체” 운영

안전근로협업체란?

-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라 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하청업체”라 함)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업체 (사업장 단위로 운영)

※ 안전경영위원회는 사업(공공기관 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 기구

적용대상

-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
 - * '19년 기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중점기관 32개소 포함 총 97개 기관
- ② ①의 사업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③ ②의 사업장중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
 - * 사업의 일부 도급 : 당해 사업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 (예: 석탄발전소에서 운전·유지보수 업무 등)

❖ 적용 제외

- 도급(용역, 위탁 포함)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은 비해당
 - ※ 부수적·보조적 사업 : 경비, 단순청소, 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위탁 등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 적용대상 여부는 본사 기준이 아닌 작업장(장소적 기준) 기준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원·하청업체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업체(매월 1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업체(매2월 1회)를 운영하므로 적용 제외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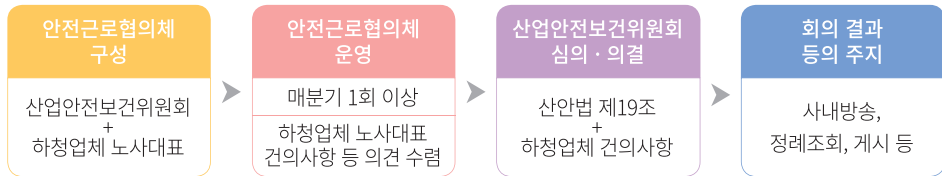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 업체*는 제외

*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방법



➔ (회의개최) 매분기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련 ① 개선요청 사항, ② 애로·건의사항, ③ 차별등 의견 개선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 ①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 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 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 실시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 (불이익 금지) 원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불이익 신고 시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 우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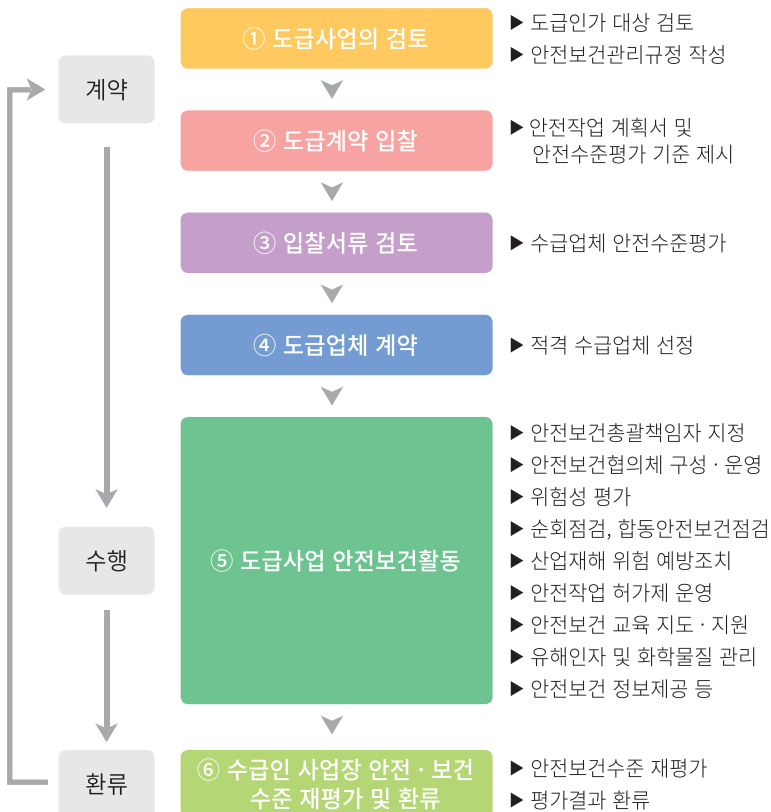
Ⅲ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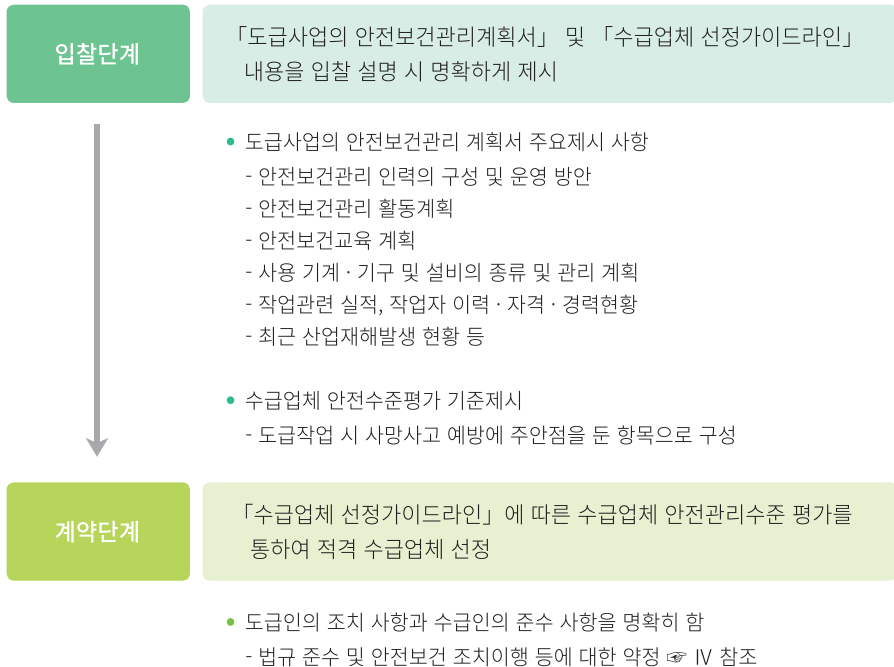
-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 도급인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준평가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평가방식을 고려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 부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구비

➔ 도급작업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구조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5),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3 선정기준 및 환류

평가결과 적용방법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사례 :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하청업체별 안전보건환경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 (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 부여
-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
- ➔ 수급업체의 안전수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원청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IV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 교육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 정보제공

-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

-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현황 제출

- ①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I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교육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3	1

① 우수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3.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 ·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② 보통: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하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에서 자체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거나,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확인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배치가 없는 경우 작업종지 운영방안이 있는 경우

② 보통: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 · 하청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원청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향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변경시에도 승인 필요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 제80조

2 도급의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 (대상)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제출기관) 관할 노동지방관서



● (제출서류)

- ①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 ②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 ③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 승인시에는 미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 해당 작업을 도급하여 사업하고 있는 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 제80조

3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II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5 산업재해 통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 '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만 포함

● 대상

- (업종)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표준산업분류 기준)
- (규모)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현황 조사표 제출

-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급인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급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

● 공표대상 사업장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율이 높은 사업장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대상

-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③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 지정방법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함
 -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5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제53조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 관계수급인 :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이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22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법 제58조제2항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0.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2.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4.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 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6.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치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
수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7.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8.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9.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0. 밀폐공간
21.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8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기준〉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안전보건조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 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0조(의자의 비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잔재물 등의 처리) 등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 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경보설비 등),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8조(세척시설 등),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등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제453조(설비기준 등),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제461조(용기 등),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464조(목욕설비 등),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468조(기록의 보존),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제471조(설비기준),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폐쇄), 제477조(격리), 제478조(바닥), 제479조(밀폐 등),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3조(작업복 관리), 제484조(보관용기) 등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

9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같음 가능

●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② 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 ③ 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사항

- ① 작업의 시작 시간
-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④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참고

➔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 ※ 합의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협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운영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1호, 제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제97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참고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

-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 수급업체가 동참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제29조 제3항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되, 해당 공정에 참여)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단,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대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내용(예시) «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장 안전관리
5. 작업장 보건관리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 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 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의 결과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2항, 제6항]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 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 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3조 ~ 제197조

1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대상)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 의무)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명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 미제공시 도급 작업 개시 연기 및 계약의 지체 책임 면제를 명시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 제86조, 제87조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정조치 대상) 관계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 사내 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 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III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12 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책’을 명시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13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14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처벌 강화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Ⅳ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15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하여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단계별 조치사항
 - (계획)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시 확인
 - (시공)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여부 확인
- 각 대장별 포함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이 반영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공사안전보건대장)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16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업무)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선임방법) 발주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17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발주자 및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하고,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18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항]

☞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대상)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도급인의 유책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요청방법)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① 연장요청서

② 연장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연장요청기간 산정근거 및 공사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 서류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만료 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요청하여야 함

- 도급인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발주자에게 그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불승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19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3항]

☞ 관계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목·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반영하여야 함

- (대상) 다음의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요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 ①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 ②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③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④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 ⑤ 그 밖에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급인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함. 다만, 불승인할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사유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적용대상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레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의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위반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건당 -0.5점, 최대 -1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

21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 사업장 내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설치·작동하는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상)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항발기가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수행사항)

-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 타워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에 한함
- 작업자가 적절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발 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전 화 | (044) 202 - 7723

| 발행일 | 2019년 7월

| 인 쇄 | (주)코끼리를키우는사람들

비매품